

1. 동물용의약품 수입자확인 신규발급

업 제 명	허 가 번 호	대 표 자
(주) 퓨리나코리아	제 86호	김 기 용
소 제 지	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7-8	

3.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

업 제 명	변 경 사 항	변 경 전	변 경 후
한국바이엘(주)	대표자 변경	김 길 원	역크하르트 빌헬름
(주) 고려케미칼	제조소 변경	충 남 온 양	인천 남동공단

2. 동물용의약품 수입업 폐업

업 제 명	허 가 번 호	대 표 자
대하무역상사	제 74호	이 용 남

4. 동물용의약품 등 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

통합공고(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-39호 : 94. 4. 15)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협회의 요건확인 품목에 대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 
1994년 6월 8일

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장

한국동물약품협회 공고 제94-3호

I. 수입추천(신고) 요령

가. 수입추천(신고)대상자 및 구비서류

구 분	수 입 자	위 탁 자	구 비 서 류
원료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 동물용 의약품부품	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	·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자 ·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	· 수입승인 신청서 5부 · 물품매도 계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1부 · 생산계획서 1부(별지 제2호 서식)
완제 동물용 의약품	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	· 동물용의약품 등 도매업자 ·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자 ·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 · 동물병원	· 수입승인 신청서 5부 · 물품매도 계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1부 · 수입 품목허가증 사본 1부 · 한글 표시서 기재사항 1부(별지 제4호 서식) · 제조 및 판매증명서 사본 1부
동물용 의약품구 및 동물용 위생용품	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	· 동물용의약품 등 도매업자 · 동물용의약품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자 ·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 · 동물병원	· 수입승인 신청서 5부 · 물품매도 계약서 또는 수입 계약서 사본 1부 · 한글 제품 설명서 1부(별지 제3호 서식) · 수출자의 제품설명서 사본 1부
완제 동물용의약품부품	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	· 동물용의약품 등 도매업자 ·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 · 동물병원 등	· 수입승인 신청서 5부 · 물품매도 계약서 또는 수입 계약서 사본 1부 · 한글 표시서 기재사항 1부(별지 제4호 서식) · 제조 및 판매증명서 사본 1부 · 수입 품목허가증 또는 기술 검토 의견서 사본 1부

- 1) 수입대행시에는 수입대행 계약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생산국정부가 발행 또는 확인한 것으로 제조회사명 및 소재지, 제품명, 원료성분 및 분량, 품목허가(등록) 번호 및 허가(등록)일자 와 생산국 법규에 의하여 제조되고 있고 자국 내에서 판매 및 수출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- 3) 원료 동물용의약품을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장이 공동구매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각 업체별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4) 동물병원(연구기관, 교육기관, 농장) 등에서 자가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비서류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나. 신고대상품목

통합공고(별표 II) 품목별 수입요령상의 해당품목중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으로부터 수입허가나 추천(신고)를 받은 품목

다. 신고대상자 및 구비서류

- 신고대상자  
농림수산부장관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으로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나 추천(신고)를 받은 자
- 구비 서류

나. 수입추천(신고) 대상품목

통합공고(별표 II)의 품목별 수입 요령상의 해당품목 중

- 1) 원료 동물용의약품 및 원료 동물용의약품부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허가한 품목의 제조원료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조신고한 주문용 사료 첨가제 제조원료에 한한다.
- 2) 완제 동물용의약품 및 완제 동물용의약품부품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수입품목 허가한 품목에 한한다.

다. 처리기간 : 3일

II. 통관 예정신고 요령

가. 신고절차

- 1) 수입 통관 3일전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통관 예정신고서를 제출,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.
- 2)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(원료 제외)을 수입한 자는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장의 국가검정 결과 통보서를 협회에 제출, 통관예정 신고서 국가검정 합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.

구 분	구 비 서 류
원료 동물용의약품 및 원료 동물용의약품부품	· 통관 예정신고서 2부(별지 제6호 서식) · 요건 확인한 수입 승인신청서 사본 1부 ·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 성적서 사본 1부
완제 동물용의약품 및 완제 동물용의약품부품	· 통관 예정신고서 2부(별지 제6호 서식) · 요건 확인한 수입 승인신청서 사본 1부 ·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성적서 사본 1부 · 한글표시서 기재사항 1부(별지 제4호 서식) · 국가검정 결과 통보서 사본 1부(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).
동물용의약품구 및 동물용위생용품	· 통관 예정신고서 2부(별지 제6호 서식) · 요건 확인한 수입 승인신청서 사본 1부 · 한글 제품 설명서 1부(별지 제3호 서식)

라. 처리기간 : 즉시

부 칙

이 공고는 199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